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574259 판결 [주식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최건섭

피 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정희장

변론 종결 2020. 5. 27.

판결 선고 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10,048달러(USD 710,048)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2011. 4. 15. 부동산컨설팅업 및 금융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2)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1999. 2. 4.부터 2002. 2. 28.까지), 주식회사 D(2002. 3. 1.부터 2010. 9. 27.까지)]은 1999. 2. 4. 설립된 E으로서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F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F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대하여 자신이 G로부터 10억 원(이하 '이 사건대여금'이라 한다)을 여신실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연 이율 12%에 차용하면서 H은행보통주와 I(I , 이후 J로 명칭 변경) 주식 보통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2010. 11.26.자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F과 주식회사 K의 근질권설정계약서 작성

- (1) F과 주식회사 K(대표이사 F, 이하 'K'이라 한다)은 G에 대하여 '작성날짜',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피담보채무의 범위', '담보한도액' 등이 백지로 된 근질권설정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한 후 K이 보유하는 I 주식 84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그 백지 부분을 보충(갑 제13호증)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근질권설정계약서(갑 제13호증, 이하 밑줄 부분이 수기로 보충한 부분임)

2010년 11월 26일

채무자 : F

근질권설정자 : 주식회사 K 대표이사 F

제1조 근질권의 설정

근질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다음 제2호에 정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그의 소유인 말미목록기재 유가증권(이하 '담보증권'이라 한다)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귀사 앞으로 그 인도를 마쳤다.

1. 채무자 : 성명 F

2. 피담보채무의 범위 :

가. 채무자가 귀사(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10년 11월 26자 대출 약정서

3. 담보한도액(이자·지연배상금·부채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금 일십삼억 원

4. 기간

가.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귀사 앞 도달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때로 하며 이 때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담보증권 목록>

I 보통주 845,000주

· Shares. No 001 to 845,000

· Certificate 발행일자 2007년 3월 27일

(2) 이어 K은 G에 대하여 'K 소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설정을 승낙한다'는내용의 2010. 11. 26.자 '질권설정 승낙의뢰서'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G의 채권변제충당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처분승낙서'를 작성하였고(갑 제13호증),

G는 2010. 11. 25. F 회계사무소 앞으로 '이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담보제공으로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고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완료시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의 '유가증권 보관증'을 작성하였다(갑 제6호증).

라. 원고의 K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1) 주식회사 L(전 G, 이하 'L'라 한다)는 2014. 12. 24. 채무자 F에 대하여, 'L가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원금 499,508,900원, 총액 846,174,894원의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2014. 12. 10.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갑 제4호증).

(2) 그 후 원고는 2015. 2. 13. K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2. 10. L로부터 K의 대표이사 F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K이 담보질권으로 제공한 이 사건주식에 대한 권리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갑 제3호증).

(3) 이후 K은 2015. 4.경 'K은 K의 대표이사 F이 2010. 11. 26. G(현 L)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을 차용함에 대하여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2015. 3.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출원리금 총 잔액은 896,196,403원이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도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K은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되어 K이 수령하게 될 매각대금 중 이 사건대여금 채권의 원리금을 우선 차감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권 권리 인정 및 매각대금 입금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7호증).

마. 원고의 F에 대한 지급명령 확정

원고는 2019.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825,464,549원 및 그중 499,508,900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9.2. F에게 송달되어 2019. 9.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K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자로서의 지위와 향후 이 사건 주식이 매각될 경우 그 담보실행금액을 우선 원고의 계좌에 입금받는 것을 확인받았고, I 주식에 관한 매각절차를 주관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 매각을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매각의 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K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I 전체 주식의 6.5%(845,000주)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I 전체 주식 매각대금 10,923,807달러 중 이 사건 주식의 비율 6.5%에 해당하는 710,048달러($10,923,807\text{달러} \times 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1) K은 2013. 10.경 피고에게 'K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각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을 제4호증).
- (2) K은 2015. 4. 16. 피고에게 'K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위임에 관하여 원고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니 향후 이 사건 주식의 매각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원고에게 통지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을 제6호증).
-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5. 4. 22. 이 사건 주식의 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권보관증(이하 '이 사건 주권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갑 제9호증).

■ 주권보관증(갑 제9호증)

보관자 : 피고

대상주권 : 발행회사 : I(주권의 표시에 따름)

증서번호 : 1. 주권번호 : 001 ~ 845,000, 주식수 : 845,000주

1주당 액면가 : 4,000RIEL

주주명 : K(주권의 표시에 따름)

보관자(이하 '피고'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상주권(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관한다.

1. K의 대리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K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함에 대하여 동의한다.

2. 피고는 K의 대리인 원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 (각종 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K에게 입금하고, 2)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K의 대리인 원고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기로 하고 3) 그 이외의 어떠한 의무도 없다.

3. K의 대리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K에게 입금함을 동의하고 2)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 등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주주인 K이 부여한 대리권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주식 매각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K의 대리인 원고로부터 2015. 4. 22. 15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실물을 이전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015. 4. 22. 피고 기명날인

K의 대리인 원고는 2015. 4. 22.자 주권보관증의 제조건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이 사건 주식의 보관을 피고에게 위임한다.

2015. 4. 22. K의 대리인 원고 기명날인

(4)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M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9.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K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106512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6. 30. 채무자 K에게, 2019. 5. 15. 제3채무자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9. 7. 9.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은 769,346,868원이고, 피전부채권은 채무자 K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매각업무위임을 받아 채무자가 캄보디아 소재 I(J)의 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845,000주(이 사건주식)를 매각하고 수령한 매각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다(을 제3호증).

(5) 피고는 2019. 10. 2. K에게 '피고는 2013. 10. 10. K과 매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2. K의 대리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이전받아 2018. 6. 15.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30. 매각대금 1,300만 달러 중 1,000만 달러를 수령하여 매각비용 등을 제외한 7,923,807달러를 보관하고 있고, 그 중 400만 달러를 각 주주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K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그 전부권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배분금 등 권리에 대한 전부명령 통지'를 하였다(갑 제10호증).

다.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매각에 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주권보관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K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위탁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K에게 입금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실행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을 위탁한다는 기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주권보관증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인 K의 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만 보일 뿐 원고의 이 사건주식에 관한 질권실행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M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9. 5. 10.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K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매각대금

채권을 전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위탁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 행사로서 이 사건 주식 매각을 위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Ⅰ 주식의 매각절차를 주관하는 피고는 Ⅰ 주식에 관한 '실질권리자'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서 '실질권리자'인 원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실행으로서의 매각위탁을 거절하였고, 우월하고 독점적인 지위에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자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도록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위협하여 이 사건 주식의 환가방법을 찾을 수 없던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강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10,048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¹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각 위탁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각 위탁 요청을 거부한 것이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도어려운 점, ② 원고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실행을 위하여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신이 직접 1의 주주가 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주식의 매각을 위탁할 수도 있었던 점, ③ 원고가 공포를 느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권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주권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거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성철, 판사 천무환, 판사 강면구